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주)대우건설 3층 푸르시오아트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자기주식 소각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1호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2-2호 : 상법개정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3호 : 홈페이지 주소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보현 선임의 건 (임기 3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안성희 선임의 건 (임기 3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주주총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전자투표)를 허용합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의결권 위임내용, 인감날인

※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대리인: 회사지정 주총 담당자)
2.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대리인: 회사지정 주총 담당자 외)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약력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안내

2026년 3월 4일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 보 현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본인은 2026년 3월 26일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제26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1. 주 주 번 호 :
2. 소 유 주 식 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 임 할 주 식 수 : 주
5.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결의사항별 찬반 여부

의안번호	주주총회 결의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2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제2-2호	상법개정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3호	홈페이지 주소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김보현 선임의 건 (임기 3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안성희 선임의 건 (임기 3년)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 위임장 제출 시에는 반드시 주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위임자>

주 주 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 임 일 자 및 위 임 시 간 : 2026년 월 일 시 (인)

[첨부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 호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7 조 (이사의 수와 선임)</p> <p>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27 조 (이사의 수와 선임)</p> <p>③ (삭제)</p>	<p>개정상법 반영</p> <p>-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관련 조문 정비</p> <p>※ 상법 시행시기 ('26.9.10 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p>
<p>(신설)</p>	<p><u>부칙</u></p> <p><u>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u></p> <p><u>다만, 제 21 조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27 조 제 3 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 27 조 제 2 항, 제 28 조의 2, 제 29 조, 제 32 조, 제 36 조(제 5 항 제외)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p>	<p>부칙신설</p> <p>: 효력 발생시점 명시</p>

□ 제 2-2 호 : 상법개정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1 조 (총회의 소집)</p> <p>⑤ 회사가 제 3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 같음할 수 있다.</p>	<p>제 21 조 (총회의 소집)</p> <p>⑤ <신설>회사는 상법 제 542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p> <p>⑥ (현행 ⑤항과 동일)</p>	<p>상법 개정 반영</p> <p>-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p> <p>※ 상법 시행시기 (‘27.1.1 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p>
<p>제 27 조 (이사의 수와 선임)</p> <p>② 이사 중 <u>사외이사</u>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 명 이상으로 한다.</p>	<p>제 27 조 (이사의 수와 선임)</p> <p>② 이사 중 <u>독립이사</u>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 명 이상으로 한다.</p>	<p>상법 개정 반영</p> <p>: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관련 조문 정비</p>
<p>제 28 조의 2 (책임감경)</p> <p>①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u>사외이사</u>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p>	<p>제 28 조의 2 (책임감경)</p> <p>①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u>독립이사</u>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p>	<p>※ 상법 시행시기 (‘26.7.23 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p>
<p>제 29 조 (보선)</p> <p>② <u>사외이사</u>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7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한다.</p>	<p>제 29 조 (보선)</p> <p>② <u>독립이사</u>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7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한다.</p>	

<p>제 32 조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 2.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관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상위원회 	<p>제 32 조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 2. <u>독립이사</u> 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관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상위원회 	
<p>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사외이사</u>이어야 하고, <u>사외이사</u>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독립이사</u>이어야 하고, <u>독립이사</u>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후단 삭제></p>	
<p><신 설></p>	<p>⑤ <u>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p>	<p>상법 개정 반영</p> <p>: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관련 조문 정비</p>

<p><u>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u>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상법 개정 반영 - 감사위원 선·해임시 3%를 강화에 따른 조문 정비</p> <p>※ 상법 시행시기 (‘26.7.23 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p>
<p>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사외이사</u> 이어야 한다.</p> <p>⑥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이 조에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독립이사</u> 이어야 한다.</p> <p>⑧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이 조에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상법 개정 반영 :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관련 조문 정비</p> <p>※ 상법 시행시기 (‘26.7.23 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p>
<p>(신설)</p>	<p><u>부칙</u> <u>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u> <u>다만, 제 21 조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27 조 제 3 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 27 조 제 2 항, 제 28 조의 2, 제 29 조, 제 32 조, 제 36 조(제 5 항 제외)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p>	<p>부칙신설 : 효력 발생시점 명시</p>

□ 제 2-3 호 : 홈페이지 주소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 4 조 (광고방법)</p> <p>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wooenc.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헤럴드경제에 게재한다.</p> <p>제 37 조의 2 (외부감사인 선임)</p> <p>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단,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대신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wooenc.co.kr)에 광고할 수 있다. 이때 광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p>	<p>제 4 조 (광고방법)</p> <p>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wooenc.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헤럴드경제에 게재한다.</p> <p>제 37 조의 2 (외부감사인 선임)</p> <p>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단,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대신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wooenc.com)에 광고할 수 있다. 이때 광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p>	<p>정관상 홈페이지 주소를 대표 도메인으로 기재</p>
<p>(신설)</p>	<p>부칙</p> <p><u>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u></p> <p><u>다만, 제 21 조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27 조 제 3 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 27 조 제 2 항, 제 28 조의 2, 제 29 조, 제 32 조, 제 36 조(제 5 항 제외)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p>	<p>부칙신설</p> <p>: 효력 발생시점 명시</p>

[첨부4]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약력

[사내이사 김보현 후보자 약력]

의안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주된직업	주요약력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추천인	해당법인 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 관계	채납 사실 여부	부실 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3호	김보현	1966. 02.10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 학력 : • 1988 공군사관학교(공학사) • 2003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 주요 경력 : • 2016~2018 공군제19전투비행단장 • 2019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 2020 공군준장 예편 • 2020~2024 (주)헤럴드 부사장 • 2023~2024 (주)대우건설 총괄부사장 • 2024~ 現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회	없음	특수관 계인	없음	없음	없음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공학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이후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을 거쳐 2020년 공군준장으로 예편하고 (주)헤럴드 부사장 및 (주)대우건설 총괄부사장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재임중에 있음. 이러한 관련분야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대우건설 사내이사로서 내실경영을 이끌고,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이에 본 후보자를 이사로 추천 함.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안성희 후보자 약력]

의안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주된직업	주요약력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추천인	해당법인 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 관계	채납 사실 여부	부실 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4호	안성희	1976. 11.24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학력 : • 2001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2012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사(회계학) • 2016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회계학) ▶ 주요 경력 : • 2000~2008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2008~2013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 2021~2023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 2017~現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학과장) • 2023~現 (주)대우건설 사외이사(감사위원) • 2025~現 (주)알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 • 2026~現 한국국제회계학회 부회장 • 2026~現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사외이사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없음	계열회사 임원	없음	없음	없음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및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박사(회계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한국회계 기준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였음.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임 중이며, 한국국제회계학회 부회장, 한국 세무학회 부회장 및 대우건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중인 회계·재무분야 전문가 임. 이러한 관련분야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대우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해 대우건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함.

[첨부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